



문서번호 사법-2009-1202

수 신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제위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박근웅 시민감시국장 02-723-0666 kypark@pspd.org)

제 목 이견희 전 삼성그룹 회장 특별사면 '부적절' 의결을 요청합니다

날 짜 2009. 12. 14. (총 3 쪽)

## 이견희 전 삼성그룹 회장 특별사면 '부적절' 의결을 요청합니다

.....

1. 안녕하십니까?

2. 귀 위원이 참여하시는 사면심사위원회는 사면법에 근거하여 법무부장관이 안전으로 회부한 사면대상 후보자들이 사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보았을 때 적절한지를 심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견제하여 부적절한 이가 사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지난 8월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견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올해 연말에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사회 일각의 요구가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사회통합을 위해서나 재판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는 과거의 재판 및 법률이 변화된 시대상황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이 적절한 대상자를 상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견희 전 회장이 사면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은 사면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법앞의 평등이라는 기본적 가치와 형사사법제도를 훼손하고 법집행의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특권층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참여연대(공동대표 : 임종대, 청화)는 만약 법무부장관이 이견희 전 회장을 특별사면 후보자에 포함시켜 사면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경우, 부적절하다고 의결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해야 사면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우선 지금 이건희 전 회장을 사면하는 것은, 재판결과가 확정된 지 불과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이를 사면하게 되는 것으로 매우 부당합니다.

이건희 전 회장은 지난 2008년 4월 17일에 삼성SDS 신주인수권사채 불법발행에 따른 배임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이 전 회장은 최종적으로 2009년 8월 14일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를 보면, 이 전 회장의 형사재판이 확정되기까지 1년 4개월이 소요되었고 확정 판결이 선고된 지 이제 겨우 4개월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전 회장이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5년)과 비교해보면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전 회장을 사면한다면 이는 초단기 조기 사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사법체도가 기대하는 범죄예방적 효과는 묘연해지고 검찰과 법원 등의 공적 자원을 투입해서 진행한 형사소추와 재판의 의미가 사라져버립니다.

과거에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일부 기업인들에 대해 이같은 초단기 조기 사면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할 사례입니다. 잘못된 사면권 행사 사례를 재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건희 전 회장이 지니고 있는 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해 사면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유로 대기업 총수 등 특정인에 대해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으로 이 또한 매우 부당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 단체들은 이건희 전 회장이 지니고 있는 경제적 비중을 고려하여 특별사면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로 특별사면을 한다면, 이는 형사사법체계에서의 특권층을 인정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과 형사사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집행의 형평성과 사법체계 전체에 대한 불신을 더 크게 만듭니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재계 단체들은 지난 수 년간 특별사면 계기가 있을 때마다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인들을 특별사면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 단체들은 2006년 광복절과 성탄절 사면, 2007년과 2008년의 광복절 사면을 앞두고 사면 요청 대상 기업인 명단을 대통령과 법무부 등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2008년 광복절 사면 때 기업인 74명을, 2008년 1월 1일 사면 때 기업인 21명을, 2007년 2월 사면 때 기업인 160명을, 2006년 광복절 사면 때 기업인 17명을 포함한 대규모 특별사면복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분식회계, 배임, 횡령 등 기업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반복하고 남발하는 것은 법집행의 형평성에 대한 불신을 더욱 깊게 했을 뿐이고 기업인들은 특권층이라는 사회적 위화감을 키우고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만을 키웠습니다.

다행히 지난 2009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정부는 “경제인 기업비리 등을 사면대상

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정부는 “계층간 위화감 해소, 국민통합을 지향함과 동시에 법질서 확립 기초를 유지”한 것이라고 자평한 바 있으며, 이를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였습니다. 이같은 사례를 사면심사위원들께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견회 전 회장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견회 전 회장의 정지된 IOC위원 자격을 회복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치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동계올림픽이 형사사법제도의 예외를 허용하고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에 해당하는 특별사면을 허용할만큼 중요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또 특정한 스포츠행사나 국제행사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에게 형사사법체계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부당합니다. 특정한 행사유치를 위해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향후 유사한 국제행사 유치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명분으로 이 전 회장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5. 올해 연말 특별사면을 실시할 지를 정부에서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나 재판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는 과거의 재판 및 법률이 변화된 시대상황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대통령께서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러한 경우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사면대상자로 적절하다고 의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견회 전 삼성그룹 회장의 경우는 이같은 사면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전 회장을 지금 사면하는 것은 사회통합이나 법앞의 평등 정신 등을 훼손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법무부장관이 혹시 시행될 이번 연말 특별사면의 대상자에 이견회 전 회장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한다면, 부적절하다고 의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

